■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손해배상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80일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사망자<br>(해당 시) | 성명 | 생년월일 |
| | 사망일 | 신청인과의 관계 |
| 기존 소송·합의 금액 | · 손해배상 소송 [ ] 없음 [ ] 진행 중 [ ] 확정 (금액: 원)<br>· 기업 합의·화해 [ ] 없음 [ ] 있음 (금액: 원) | |
| 대리인<br>(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 |
| 증빙서류 제출 여부 | · 종전에 제출한 서류의 활용에 동의함 [ ] ※ 제출을 생략하는 서류는 제2쪽 해당란에 표시합니다.<br>·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함 [ ]<br>· 소송·합의 금액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함 [ ] |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신청안내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신청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자가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은 18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및 의학적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신 동의 시 처리상황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을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미성년자인 경우),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수·검토 | ⇒ | 지급결정 | ⇒ | 동의 및 지급 신청 | ⇒ | 지급신청 사실 통보 | ⇒ | 지급 |
|---|---|---|---|---|---|---|---|---|---|---|
| 신청인 |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 | 신청인 | |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 |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
| | | | | □ | 지급결정의 통지 |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종전 제출서류 활용 동의 및 제출 생략 서류(해당자만 작성합니다)

[ ] 본인은 종전에 제출한 아래 서류를 손해배상금 심의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대통령령 제367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제출한 구제급여 첨부서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로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법률 제215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대통령령 제36726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종전에 제출한 구제급여 첨부서류 중 같은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증명에 관한 서류

[ ] 간병 관련 서류

[ ] 사망 관련 서류 및 장례비 영수증 등

[ ]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서류에 상응하는 종전 제출서류

서류명: _____

※ 종전에 제출한 서류와 같은 종류의 서류라도 종전 제출 이후 새로 발생하거나 작성된 치료비·간병비·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 발생분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신청인이 첨부해야 할 서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서류 중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1.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나. 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및 의료기기·의료소모품 구입 영수증

      2) 진료비·약제비 명세서 및 의료기기·의료소모품 명세서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1) 및 2)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간병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원확인서(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소견서

      2) 간병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어 향후 치료비 또는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가.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

   나.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3. 신청인이 소득이 있었던 경우

   가. 신청인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인이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업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5.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나. 사망 당시 의무기록

   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목 및 나목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장례비 영수증 등 피해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그 밖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